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3. 11.(수), 15:00

2. 장　　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　위 원 장
송도균　부위원장
이경자　위　　원
이병기　위　　원
형태근　위　　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(2009-09-034)

○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(주)에이치씨엔이 신청한 (주)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, 유인무가 신청한 (주)씨씨에스의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승인조건(승인후 3년간)

- 최다액출자자(특수관계자 포함)는 법인과의 대여, 담보, 지급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
- 법인의 회계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받아야 한다
-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, 이사회 개최시 회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2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(2009-09-035)

○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와이티엔이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하여,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분야 변경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변경승인 신청내용

법인명	채널명	변경사항	변경사유	방송분야	
				변경전	변경후
(주)와이티엔	YTN	방송분야	보조적 데이터를 추가하여 시청자 편익 증대	보도(종합보도)	보도(종합보도)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3)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결과에 관한 건(2009-09-036)

○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에 대하여 심사사항별 및 총점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심사사항별 심사결과

심사사항(배점)	점수	심사결과
1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(120)	59.34	부적격
2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・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(120)	61.83	부적격
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(100)	54.17	부적격
4. 재정 및 기술적 능력(100)	56.10	부적격
5. 방송발전 지원계획(60)	29.66	부적격
총 점(500점)	**261.10**	**부적격**

사. 보고사항

1) 「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 방안」에 관한 사항

○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양방향성과 융합형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IPTV 교육서비스를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「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 방안」을 보고받고,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.

※ 주요내용

1. 기본방향
- IPTV 교육콘텐츠・응용서비스・인프라 구축은 시장원리에 따르되,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영역에서 수행
- 금년 중 시범사업 실시 및 학교망 고도화를 완료하고, '10년 1학기부터 전국 초・중・고등학교 학급에 서비스 제공

2. 주요 추진내용
- 학교인터넷 인프라 고도화
- 우수한 교육콘텐츠 확보・공급
-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

2)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○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'08. 6월부터 방통위, 문화부, 행안부, 이통사, 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마련한「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」을 보고받고, 이용자가 유선 인터넷과 대등한 수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값싸고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.

※ 주요내용

1. 비전 :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

2. 목표
- 이동통신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비중 : 18%⇒ 40%
- 모바일 콘텐츠 산업규모 : 1조원 ⇒ 3조원
-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 : 10% ⇒ 40%

3. 주요 추진과제
- 모바일 컨텐츠사업자 경쟁여건개선
-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개선 (문화부, 행안부 소관)
-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환경 구축

아. 기타

1) KT-KTF 합병심사관련 의견청취

○ SKT 정만원 사장은 KT-KTF 합병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·방송산업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, KT·KTF합병은 통신시장의 소모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투자와 R&D, 글로벌 시장진출에 투하할 Resource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, 합병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 필요사항으로 ①필수설비 독점성 해소 ②유선시장 경쟁활성화 ③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
○ LGT 정일재 사장은 KT-KTF 합병은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존 경쟁구도마저도 복점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, 사후규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인가조건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,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주파수 편중 ②보조금 경쟁 ③필수설비 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
○ 한국케이블TV협회 길종섭 회장은 KT-KTF 합병은 유무선 통합에 따른 통신시장 수직계열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이 증대되고, 유료방송 저가시장 고착화로 방송영상산업 황폐화가 우려되므로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경쟁활성화 원칙에서 검토가 필요하며, 사전대책으로 ①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②QPS제공이 불가능한 SO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필수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
○ 이에 대해 KT 이석채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IT산업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성장동력을 점화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.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기는 산업의 메가트랜드, 글로벌 조류에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은 융합에 있고, KT-KTF합병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앞당기고 국내 IT산업이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요금인하 여력 확보로 이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.

2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월 18일(수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9:05)

※ 16:20 정회, 16:32 속개, 17:30 정회, 17:40 속개